

## 특집 Ⅲ

## 외국의 공공조달제도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페인 · 벨기에 –

외국의 공공조달제도 2회로 유럽의 중견국가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네 나라를 집중 분석한다. 나라마다 상이한 법률체계·행정문화 등으로 인해 꼼꼼히 쟁겨야 할 내용들이 많다. 각국의 공공입찰 자격요건, 공공입찰 낙찰기준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한국 전기공업진흥회  
정보조사팀 이진형

## 건설 · 건축업 등록해야 입찰자격

### 이탈리아의 공공조달제도 특징

#### 지방 건축업협회 등록해야

##### 1) 사전자격심사제도

이탈리아에서는 건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건축업협회(ONA)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건축업협회는 업자의 부정행위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련이 있을 경우 회원자격의 일시정지 또는 제명권을 가지고 있다. 전국건축업협회는 건축업자의 이익을 대표함과 동시에 법률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행한다.

한편 엔지니어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엔지니어링협회(ONE)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엔지니어링협회는 건축업협회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건설업자수는 1991년 현재 약 30만에 이르며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그중에서 약 5만에 이르는 건설업자가 공공사업의 입찰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자격을 갖고 있는 업자수가 1만5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 또는 제한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찰자격을 보유한 입자만이 입찰정보(공사내용, 공사규모 등)를 얻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공공조달 계약은 개별기업보다도 대부분이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조달의 입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 Albo(ANC) 또는 건축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건설업등록 Albo는 공식명부로써 공공조달 관련기관 또는 입찰자들에게 이용되

고 있다. 이 등록명부는 7천5백만리라(한화 : 5천6백만원 상당)를 초과하는 공공조달계약의 입찰자격심사 및 입찰에 이용된다.

건설업등록 Albo는 정부, 건설업계, 기능인, 조합,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사업省」의 중앙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지방위원회도 같은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수는 중앙위원회가 31명인 반면 지방위원회 위원은 18명이다.

중앙위원회는 매출액이 30억리라(한화 : 22억원 상당)를 초과하는 건설업자의 서열부여 및 서열수정에 관한 심사를 한다. 지방위원회는 소규모업자의 요구 및 지방의 건설수요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건설업등록 Albo의 서열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lbo의 서열부여는 객관적기준과 주관적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객관적 기준으로는 기술적능력, 자산과 매출액, 생산·기계·기술설비에 관한 신고 내용이 해당되면 과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조사된다. 그리고 발주자(공공사업, 민간사업)가 발행하는 공사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사의 목적, 장소, 공사기간, 공사결과, 하청업자 사용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사업규모(10등급)나 업무 내용(20등급)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는데 Albo의 서열부여는 5년마다 경신된다. 건설회사는 매년 부과되는 등록세를 2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수많은 업자가 입찰에 등록하고, 실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어떤 입찰에는 수백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물품조달 업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공조달발주자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찰자는 너무 많은 업무량과 경비부담 때문에 곤역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입찰자는 수주목적달성을 위하여 정치적 또는 경제적 유착관계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며, 1992년~1993년의 정·재계의 부정부패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했다든지, 입찰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든지, 경합했던 회사가 낙찰된 경우, 입찰자는 해당입찰과정 및 결과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행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 법전이나 공적기관 없어 애로

### 2) 공공조달

이탈리아에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전이 없으며, 공공조달과 관계되는 문제를 조정·조사하는 공적기관이 없다. 그리고 건설에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 법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통지)가 있고, 이러한 관련법규가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에 따라 독자적인 건설관련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州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승인하게 되는데 조례내용이 불완전하다든지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건설관련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공공조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낙찰, 보증, 낙찰기준 등)
- ② 공공사업법, 공공건축법
- ③ 반 마피아법
- ④ 지역우선규정, 특정그룹 우선규정
- ⑤ 행정서비스에 관한 법령

공공조달은 중앙행정부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

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안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에 대해서 건설·도시개발·사회간접자본정비 등에 관한 예산을 할당하고, 주는 해당개발계획 등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게 된다. 공공사업에 관한 조달이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사업省이 관할하고 있으며, 교통省은 고속도로건설에 관한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상·하수도공사조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내 행정기조는 지방자치의 촉진과 행정의 지방분권화에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적 차원의 공공사업을 제외하고는 조달관련법규나 관리·감독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상의 특징 때문에 공공조달에 있어서도 지역진흥, 지방기업(상품)을 우선하고,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도 관계법규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 운용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공공조달발주자는 독자적으로 사전자격심사명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사전자격심사기업 및 그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 공개입찰 80%, 제한입찰 15%

#### 3) 입찰제도

이탈리아의 공공사업 전체의 80%는 공개입찰, 15%는 제한입찰, 5%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개입찰이나 제한입찰도 입찰응모자는 Albo의 서열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개입찰도 공개제한입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개제한입찰과 제안모집(설계공모)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개제한입찰은 사전에 입찰자를 제한하여 입찰을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찰공고는 전국지, 지방지에 게재되며, 입찰요강에 기재된 Albo의 서열(등급)이 자동적으로 입찰응모자를 제한하게 된다. 입찰은 공개장소에서 공표되며, 불완전하거나 지연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입찰신청은 거절된다.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공공공사 조달에서 자격이 박탈된 업자는 입찰참가가 배제된다.

공개제한입찰의 낙찰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최저가격 또는 최대폭의 가격인하를 제시한 업자가 낙찰된다.
  - ② 발주자는 비공개의 예정가격대(기본적으로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5%로 함)를 설정한다. 예정가격대 또는 평균입찰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자가 낙찰된다.
  - ③ 응찰자의 입찰가격평균에 가장 근접한 업자가 낙찰된다.
  - ④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의 50%를 배제하고, 남은 입찰자의 가격인하후의 입찰가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업자가 낙찰된다.
  - ⑤ 발주자가 조달량의 80%를 망라한 견적을 제시하고, 전체 합계의 최저입찰업자가 낙찰된다.
- 제한모집(설계공모)은 특별히 설계능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사업이나 복잡한 내용의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발주자는 건설계획(목표)를 정하고, 입찰응모자 공고를 하는데 입찰참가자는 Albo의 서열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입찰초청장에는 프로젝트의 작업내용, 기준, 관련정보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초청된 입찰자에게는 설계비용은 지불되지 않는다. 낙찰기준은 가격, 공사기간, 기술적 능력, 경제적 가치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제안모집은 특성상 대규모공사에

이용된다. 설계소유권은 행정당국에 귀속된다.

수의계약은 긴급 프로젝트, 극비 프로젝트, 부적절한 공개입찰, 기술적 노하우 또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있을 경우 등에 한정된다. 수의계약은 최저 3개사와 계약교섭을 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

### 입찰에서 낙찰 수속, 행정법 적용

#### 4) 청부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공공사업계약은, 입찰에서 낙찰자까지의 수속에 관해서는 행정법에 따르며 공공사업 실행에 관해서는 민법(民法)에 따르게 된다.

법적인 구제절차는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절차가 있다. 입찰공고나 발주의 기술적 요구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나 상급 행정기관에 의해 시정된다.

공공사업계약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발주자의 상위행정기관에 의한 인가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회계검사재판소에 의한 재정감독 아래에 있다. 행정적 구제절차에는 불법행위의 중지, 취소, 철회, 계약수정 등이 포함된다.

사법적 절차에는 행정재판소에 의한 취소, 가처분(계약중지)이 있다. 다만 행정재판소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데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무효청구소송을 해온 경우에 한정된다. 사법적 절차는 피해자의 비용손실 및 기회상실에 의해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공사중인 공공사업계약에 의한 이의제기는 조정위원회에 맡겨진다. 모든 공공사업계약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5명의 조정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결정은 계약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심에 상

고를 할 수 있다.

### 공공사업 계약 EU지령에 준거

#### 네덜란드의 공공조달제도 특징

##### UAR입찰분쟁은 중재위에서 중재

###### 1) 공공조달 및 입찰제도

네덜란드의 공공조달입찰규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에 의한 조성이나 자금원조를 받는 협회에 한정된다. 중앙정부의 공공조달은 국방성, 교육·과학성, 농림수산성에 의하여 발주된다. 중앙정부는 공공공사입찰에 관한 규칙(BAW)을 제정하였는데, 同규칙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계약결정은 EU지령에 준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BAW에 의한 공공사업의 구별은 EU지령에 준거하는 것과 EU관보에 공고할 필요가 없는 기타 공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BAW에 의한 공공사업계약은 통일입찰규칙(UAR)에 준거하고 있다. UAR은 중앙정부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UAR을 이용하는 발주자는 청부업자에 대하여 경쟁규약(SPO: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가격규제조합)이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UAR은 입찰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권장하고 있다.

BAW와 UAR은 모두 중앙정부의 공공조달기관에게만 적용된다. 그 이외의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공사 조달에 관한 1977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물론 1977년법은 UAR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입찰고시에 UAR을 자주적으로 적용하는 일도 있다.

UAR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공공입찰 : 어떠한 청부업자도 입찰에 참가 가능
- ② 선정입찰 : 어떠한 청부업자도 입찰참가자로 등록 가능. 최종적으로는 1개사 이상, 공표된 상한수내의 업자가 입찰
- ③ 제한입찰 : 적어도 2개사 이상의 일정수의 청부업자가 입찰참가 가능
- ④ 선정제한입찰 : 적어도 2개사 이상의 일정수의 청부업자가 입찰에 앞선 선정에 참가 가능. 선정후 1개사 이상의 청부업자가 입찰등록 가능
- ⑤ 개별계약 : 발주자는 1개사와 가격교섭을 하고, 계약결정은 개별로 실시. 개별계약은 UAR에 언급되지 않은 형태임.

통상적으로 정부는 입찰고시를 공식적으로 행하여 할 의무가 있다. UAR과 BAW에서는 특별한 조건에 의하여 계약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어떤 입찰형태를 선택하든지 자유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자유롭게 입찰형태를 선택·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독자적인 공공조달부문이 있으며, 조달업무에 관한 관리는 시민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 반경쟁행위 금지

#### 2) 건설부문에 있어서의 경쟁과 카르텔

네덜란드의 경제경쟁법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카르텔에 의한 활동이 인정되고 있다. 건설부문에 관한 규칙에서는 민간의 가격규제조합(SPO) 이외의 한정적인 협정이나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시장을 공유하는 거래, 가격조정, 기타 반경쟁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SPO는 공통가격형성규제(UPR)에 의한 입찰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보고 : 건설회사는 입찰의지가 있음을 SPO에 대해서 연락한다.
- ② 입찰회의 : SPO는 입찰후보자를 회의에 소집 한다.
- ③ 가격비교, 입찰자격자의 결정과 철회 : 회의에서 가격비교가 이루어진다. 건설업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적산된 가격이 발표된다. 가격비교를 한 다음, 입찰가격이 너무 낮다든지 너무 높은 업자가 입찰철회의사를 밝힌다. 최저가격업자가 입찰자격자가 되어 발주자와의 교섭에 참가하게 된다.
- ④ 입찰비용 : 연구개발·교육비를 위한 비용이 입찰가격에 추가된다. 공공사업을 청부한 업자가 SPO에 입찰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SPO는 각 입찰자에게 입찰비용을 지불한다.
- ⑤ 조직운영비용 : 규정에 의하면 제일 낮은 가격의 1.5%를 상한으로 한 금액이 입찰금액에 추가된다.
- ⑥ 우위성 :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위성이 있는 건설업자는 가격제출기한후라 할지라도 지명을 요구할 수가 있다. 지명은 입찰참가자에 의한 전원투표가 필요하며 만약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명을 받은 건설업자는 최저입찰가격과 경합을 별일 수가 있다.

UPR 입찰규약에 의하면, 입찰자가 가격제출을 한 후에는 발주자가 입찰자와 조정을 할 수 없도록 가격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건설부문에 관한 규칙과 SPO규약은 공공발주나 민간 발주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업자든 해외업자든지 SPO에 등록된 상태이면 적용을 받는다.

네덜란드에는 수많은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다. 1992년 현재, 400여개의 카르텔이 다양한 직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카르텔은 공식적으로 경제省에 등록을 한다. 카르텔협정에서는 가격수준, 공급제한, 생산영역에 대하여 관리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대신에 업계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SPO 카르텔은 1963년에 창설되었는데 그동안 입찰에 있어서 질서있는 합리적 경쟁을 조장하면서, 「경제적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을 이끌어 왔다. SPO 카르텔은 4200개의 건축업자와 3000개의 기타 업자가 가입해 있으며, EC 가맹국에서도 150개의 외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1992년에 EU는 SPO 카르텔이 자유경쟁을 해치는 것으로써 UPR에 대해서 벌금부과와 해산을 요구하였다. EU는 SPO규제가 로마조약의 제8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마조약 제85조는 'EC지역내의 무역을 방해하고,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어떠한 기업협정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SPO는 EC재판소에 제소한 바, 1992년 7월에 EC 재판소로부터 중간판결이 내려졌다.

중간판결내용은 EU에서 SPO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과, 가격조정을 위한 입찰회의는 이후 열려서는 안된다는 것, SPO는 최저가격을 전달하지만 입찰비용과 건설산업에 대한 기부금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입찰참가기업의 공표와 SPO회원에 부여되는 행위규범은 묵인 된다는 것 등이었다.

그 이후의 EC재판소의 최종판결과 SPO의 대응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 SPO 시스템이나 UPR 입찰규약은 건설업자가 입찰에 있어서의 가격공모(담합)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SPO 시스템은 명문화된 규약을 갖고 있으며 가격형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가가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기능해 왔다. SPO회원은 규약을 엄격하게 지키고, 발주자는 SPO의 활동을 주시하여 왔다.

일부 발주자측에서는 청부업자들의 사전협의(입찰회의)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비난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SPO활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발주자측은 'SPO 시스템이 격렬한 가격경쟁을 배제 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카르텔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카르텔 조직이 곧바로 소멸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EU 가맹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도 비공식 카르텔 조직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 UAR 중재권장

### 3) 청부업자에 대한 구제조치

UAR(통일입찰규칙)은 공공공사의 분쟁(입찰자끼리의 분쟁도 포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권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UAR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 입찰자끼리의 분쟁에서는 개인간의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기술사, 건축사, 청부업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상호이해와 타협을 권장하지만 법적구제조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법적 소송을 꺼리지만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발전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법적구제조치는 불법적인 행위의 취소, 가처분, 손해배상이 있다.

## 공사실적·기술력·자금력 등 심사대상

### 스페인의 공공조달제도 특징

#### 공공사업계약자문위원회 서열부여

##### 1) 사전자격심사제도

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재무성의 「공공사업계약자문위원회」로부터 서열부여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서열부여는 2천만페세타 이상의 공공사업에 참가하는 청부업자에 대해서 1991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서열부여의 심사항목에는 기술력(인적자원, 스텝의 교육수준), 자금력(사업에 활용되는 자본), 공사실적, 공장설비, 기계공구, 플랜트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서열부여는 청부업자의 활동 영역(건축, 토목, 설계 서비스)에 따라 세분화된다. 서열은 4년간 유효하다.

한편, 산업省은 청부업자의 공식등록명부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산업省은 하청업자의 서열(등급)부여를 하는데, 서열부여를 받고자 하는 청부하청업자는 최근 5년간의 경력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곧 신규사업자의 하청업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다.

서열부여를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시금 그 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조달액의 2%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계약을 딴 업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EU 국가와 상당히 다른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서열부여가 필요한 공공사업에 있어서, 스페인에 등록되지 않은 EC가맹국의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① 스페인의 법률에 복종할 것에 동의 할 것

② 기업의 능력(기술력, 자금력, 경영상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개인도후 1년간의 계약상의 보증
- 최종인도후의 책임기간은 중대한 결함이나 부정이 없는 한 15년에 한정된다.

#### 각 행정기관 독자적인 조달위원회 갖춰

##### 2) 공공조달

모든 행정기관(중앙정부기관, 자치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은 독자적인 조달위원회를 갖고 있다. 표준사양의 물품공급은 재무省이 일괄조달한다.

공공조달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사업, 물품공급, 공공서비스의 관리,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 예외적인 계약 등 5개 분야로 나뉘어진다.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계약법은 기업의 서열부여나 국가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 공사가격 지불제도 운영

##### 3) 입찰제도

스페인의 입찰방식은 옥션(Auction, 스페인어로 Subasta), 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분류된다.

옥션(Auction)은 관보에 공시되며, 입찰까지 20일간의 유예가 있다. 예산가(수량, 명세, 단가, 총액)가 공표되면, 입찰자는 경매와 같은 방법으로 이 예산가에 할인(인하)가격을 부르게 된다. 옥션은 입찰자의 자금력이나 기술력 등은 관계없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시한 자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재무성의 계약자문위원회와 가계약을 맺게 된다. 그렇지만, 옥션에 있어서는 다른 입찰

자의 제시가격 평균보다 10% 이상이라고 하는 현저하게 낮은 할인가를 제시한 입찰자는 제외된다.

경쟁입찰(스페인어 : Concurso)에서는 수량명세가 불완전하든가 또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공사기간, 기술적평가, 가격, 운전비용 등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에게 부여된다.

계약자문위원회는 발주자에 대하여 제출서류의 타당성, 청부업자에게 제시되는 조건, 입찰평가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입찰에 관한 선택기준이 법률에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입찰은 프로젝트의 전모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예산도 정할 수 없는 경우나, 프로젝트의 실시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연간 1억페세타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예비설계를 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자재나 기타 수단을 발주자가 제공·관리하며 입찰자는 담보공탁을 발주자측으로부터 요구받게 된다.

옵션이나 경쟁입찰은 사전자격심사를 받은 회사에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EC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조달에 있어서는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진다.

계약자문위원회는 입찰절차에 법률적 하자가 있거나 입찰가격이 의외로 낮을 경우에 발주자의 최종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의계약은 긴급성 또는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경쟁에 부칠 수 있는 입찰자가 부족할 경우, 조사연구·설계연구·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이전의 프로젝트를 연장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격은 선정된 후보자와 직접교섭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내용별로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공공사업은 2,500만 페세타, 투자적사업은 5000만 페세타, 물품공급은 1000~2500만 페세타, 서비스 및 연구조사는 1000만 페세타이다.

스페인의 공공조달에 있어서 업자선정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청부업자가 우선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에서는 경쟁제한행위나 교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가격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협정은 유죄가 된다.

1년 이하의 공사기간인 공공계약에 대해서는 고정가격이 사용된다.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시가 차이가 20%를 넘는 경우,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 공공조달계약자문위원회는 공사종류에 따른 가격개정목록을 발행하고 있다.

가격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기술혁신에 의하여 인건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스페인의 공공발주에 있어서 특색있는 점은 공사가격지불제도에 있다. 공공사업의 경우, 지불은 개인도로부터 9개월 이내, 최종인도로부터 65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중도지불은 매월 실제로에 따라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다. 지불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청부자의 문서에 의한 지불청구로부터 2개월 이내에 4%의 이자를 붙여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한이 6개월을 넘겼을 경우에는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체가 2년을 초과한 후에는 손해배상과 이자청구를 할 수가 있다.

###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제기 형태 일반화

#### 4) 청부업자에 대한 구제조치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분쟁은 사법(私法)을 적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제기형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계약의 해석이나 수정 또는 행정상의 문제는 행정측의 견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약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것은 공공사업의 최종계약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발주자에 대한 재심리가 거부되거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에는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입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배제되었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정부·업계·노동자대표구성된 ‘전문위’가 심사

### 벨기에의 공공조달제도 특징

#### 자격심사제도 까다로워

벨기에에서는 공공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격심사(Recognition) 또는 자격증명(Accreditation)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토목, 건설분야가 많으므로 건설업은 등록제이며 공공조달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입찰자의 전반적인 능력 등에 관해서 자격심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공공공사(公共工事)에서 자격심사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11월부터인데 이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사」라 함은 건설, 해체, 수선 및 엘리베이터, 발전기 등과 같이 건물과 일체되는 설비의 제조, 설치, 설비공사, 수리 등을 말한다.

자격심사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공사분야와 수주실적에 따른 대상회사의 서열부여이다. 자격심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공공공사 조달(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관청)

- 공공조달규칙에 따라야 할 기관에 의한 조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학 등)

- 공공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간공사 자격심사의 과정에 있어서 관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업의 자산

- ② 기술력

위의 항목은 다음 4개 요소에 기초하여 관리된다.

- 과거 5년간 3년분의 공사 총 매출액
- 과거 5년간에 청부받은 공사중에서 상위 4개의 규모
- 과거 5년간 중에서 3년 동안의 인적자원(관리 스텝, 노동자)에 관한보고서
- 공사에 필요한 도구, 플랜트, 기술적 시설에 관한 보고서

따라서 기업의 자산이 자격심사의 관리대상이 되므로 서열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여도 기업의 규모확대도 필요하다.

벨기에의 경우 공공공사의 입찰공시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심사 내용이 리스트업(List-up)된다.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에서는 해당하는 분야별 랭킹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심사에 있어서의 업자의 분류는 17개 분야로 되어 있다. 기업으로부터 신청된 서류는 정부·업계·노동자대표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심사한다. 벨기에는 자격심사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의 업자에게도 해당 국가에서 동등한 자격증명을 받았을 경우 그 자격증명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EU 가맹국의 국적을 갖고 있을 것.



- EU 가맹국에서 설립된 회사일 것. 대상회사가 자회사일 경우, 모기업(母企業)이 EU 가맹국에서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하고 있을 것.
- EC 가맹국에서 상업상 혹은 업무상의 등록을 받고 있을 것.
- 도산하지 않았을 것.
- 업무상의 규정위반이나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
- 양호한 재무상태일 것.
- 세금체납 및 사회보장의무 이행상태에 관한 자료가 분명할 것.

위의 기본적인 조건과 동등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EC 가맹국의 회사는 공식명부에 등재된다.

자격심사는 5년간 유효하며 기한전에 경신할 수 있다. 허위신고나 시공상의 위법행위, 법률상·계약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회사(업자)는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에는 서열(랭킹)의 격하, 자격증명의 권리정지나 취소등이 있다. 자격심사를 받은 기업(업자)의 공식명부는 「공공공사공보」에 게재·출판된다.

그렇지만 벨기에의 공공조달 입찰방식에는 공개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다.

공개입찰(일반경쟁입찰)에서는 발주자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후보자를 모집하고, 입찰공고는 「입찰공보」거나 전문지 등에 발표된다.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낙찰기준은 입찰가격이다. 제안모집은 공개된 회의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

지명경쟁입찰에서는 조건을 갖춘 후보기업이 6개사 이상일 때에는 입찰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입찰공고가 이루어진다.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되는데 발주자는 독자적으로 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낙찰을 결정할 수 있다. 공공조달의 낙찰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가격
- ② 운영상의 비용(단가)
- ③ 기술상의 메리트
- ④ 잠재적인 입찰자가 제출하는 직업적·자금상의 보증
- ⑤ 시공기간
- ⑥ 자재의 보증

이외에 발주자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입찰통지서 또는 계약기술서양으로 발행된다.

건설업은 10년 보증의 특별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공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보험제도와 건축공사에 참가하는 다양한 직업의 역할 그리고 건설업에 있어서의 업자등록, 자격심사, 작업등록 등 신규 참여자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고용한 건축사, 청부업자, 기타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건설 프로젝트팀은 10년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기술관리가 포함된 10년 보험은 10년간의 지불청구를 커버하게 된다. 자격심사를 갖고 있는 기술사무소가 설계상 혹은 기술적인 준비, 공사시공의 조사를 맡게 된다. 보험비는 공사비의 2%에 이르며 통상적으로 대형공사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중소규모의 업자의 경우에는 10년 보험에 들지 않는다.

하청업자도 원청업자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을 진다. 건축팀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30년간의 책임을 진다. 청부업자는 현재 시공중인 공사 및 준공후 정해진 기간의 공사에 공적강제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현장과 건물의 손해를 커버하는 손해보험제도도 있다.